

업무계획

제품안전 종합대책 추진계획

안전정책과
02-509-7238

1. '09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

목 표

규제는 작고 안전은 크게,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

추진 전략

- 기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확립
 -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
 - 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정기 검사를 차별화
- 불법·불량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
 -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대응
 - 불법·불량 제품 단속 강화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 제고
 - 소비자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감시활동 확대
- 수입제품의 단속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국제협력 강화
 - 세관장 확인물품을 확대하여 불법·불량제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
 -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제품안전 정보공유를 위한 협약 체결

-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
 - 안전취약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
 - 소매점, 인터넷 쇼핑몰 등 어린이용품의 판매 경로에 대한 집중관리
- 제품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법적 체계 완비
 - 종합적이고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정

2. 중점 추진과제

가. 기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확립

-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, 시장중심의 안전관리체제로 전환
 - 제품안전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,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신진화

- 정부 : 안전성조사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의 관리감독
- 인증기관 :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불량원인 조사

- 기업 : 위해제품에 대한 자진신고 및 자발적 리콜 등 율적 안전관리
- 소비자 : 시정감시 참여 등 제품안전 모니터링 확대

- 위해정도에 따라 제품 안전관리를 차등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
- * 강제인증품목은 최소화하고,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자율안전확인품목을 확대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의 신규도입을 추진

① 전기용품안전관리법

-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247종을 148종으로 통합·조정하고, 이중 95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 : '09.1.1 시행
-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: '09.3

②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

- 자율안전확인제도 운영 : '07.3 시행
- 안전인증대상 품목축소(18종→10종) 및 자율안전 품목 확대(47종→60종) : '09.6

□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

- 소비자·생산자 상생협력을 위한 제품안전 자율이행협약을 제조업체에서 대형마트, 사이버쇼핑몰 등 유통·판매업체로 확대
- * 문구·완구점을 대상으로「안전제품 판매 모범업소」를 선정하고, 타 분야 유통·판매업체로 확대

∴ 자율이행협약제도('06.7 시행)

- 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정부 및 소비자단체와 자율적으로 약속하는 협약
- 협약체결 업체는 「자율안전이행」마크를 부착 ('08.10 : 85개 업체)

-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세계수준의 안전명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품안전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

- * 소비자 불만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수출도 적극 지원 ('09 : 30억원, 20개 과제)

- 분야별 제품안전 지침서를 개발하고 안전기준 기술지도 실시

- * 동일 사고 재방방지 등을 위한 '제품안전 기술보고서' 제작·배포(기표원)

나. 불법·불량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

□ 안전관리 대상품목 확대 및 소비자 안전모니터링 강화

- 신제품 및 법정인증 대상 외 제품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대응을 강화
- * 온수매트, 직류형 전기용품 등 신제품에 대한 최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, 위해우려 제품은 리콜조치 또는 소비자 구매주의보 발령

리튬 2차전지 화재사고 대응 사례

- 현장조사를 통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공개시험 실시('08.3~7)
- 국제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WTO에 통보 ('08.10) 및 국내 고시('08.12)
- 2차전지 내장형기기(휴대폰, 노트북 등)에 대한 시판품조사 실시예정('09.5~)

-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제품안전 감시활동 확대

- * 불법제품의 인터넷 판매중지 명령 등 관련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('09.1 시행)

- * 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판매·중개 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 면제

- 불법·불량제품의 시장 퇴출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안전 모니터링을 확대

- * 지경부, 16개 시·도 및 NGO로 구성된 「제품안전 정례협의회」구성, 운영



- * 주부 안전감시원 : 60명 → 100명,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: 481명 → 800명

□ 불법 유통제품 단속강화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 제고

- 불법·불량제품의 시장 퇴출을 위한 시판품 조사를 강화 추진
- * 시판품 조사 : ('08) 84품목 1,003건 → ('09) 100품목, 3,000건
- 불법·불량제품은 수기 또는 파기 등을 명령하고, 인본공표료를 통하여 시장퇴출을 유도
- * 단, 사업자가 자진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,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하여 자율적 안전관리환경 조성

※ 불법제품 단속강화 방안

- 취약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, 불량업체는 지속적으로 관리
- 인증사항을 무단 변경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
- 인증취소 제품의 모델을 변경하여 재인증을 획득하는 기만행위 근절

- 계절상품 등 취약품목에 대한 사전예방적 시장조사 실시
- * 계절상품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결과를 성수기 이전에 발표하는 사전적 조치 강구
- * 조사결과 발표 : 여름제품(6월말), 겨울제품(11월말), 장난감(4월말, 12월초)
- KS 인증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실시
- * KS 인증제품의 경우, 안전인증과 중복되는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, 중복 시험 등에 대해서만 면제 ('09.1.1 시행)

다. 수입제품의 단속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

- 불법·불량 제품의 수입차단을 위하여 세관장 확인분류 지정 확대

- * 관세청과 협력하여 불법·불량제품의 상습 수입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 (세관장 확인품목 : ('08) 18개 품목 → ('09) 23개 품목)

- 중국과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제발방지를 위한 정부간 협약을 추진

- * 한국(KATS)-일본(NITE) 간 제품안전협력 MoU 체결 ('08.12.)

- 불량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「위해정보 사전통보 시스템」 구축

- * 저가 위해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OECD, APEC 규제당국과 협력체계 추진

라.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

□ 안전취약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 및 단속 강화

- 소비자 불만 신고품목, 정기검사 불합격 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실시

- * 안전취약 품목('08년 조사결과) : 비비탄총, 어린이용 장신구, 유모차 등 9개 품목

- * 안전성조사 확대 : ('08) 20품목, 299건 → ('09) 25품목, 650건

-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의 판매경로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할인마트, 학과주변 분구점 등을 집중 관리

- *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구입경로 (완구조합 조사결과 '05)

매점/할인점 포함	소매점	인터넷 판매	백화점	체인점
51%	22%	10%	8%	4%

- 유해물질 함유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('09.10)

- * 최근 어린이의 지적능력과 체력이 향상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포장제품을 쉽게 개봉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
- 대상품목(7) : 방향제, 세정제, 접착제, 광택제, 부동액, 얼룩제거제, 워셔액

□ 어린이용 제품 안전에 대한 홍보·교육 강화

- 전국 문구점, 노소매점 및 대형매장 등을 대상으로 「어린이용 제품 안전 캠페인」 실시
 - * 유통·판매업자의 인식부족을 감안하여 현장단속과 지도 계몽을 병행
 - * 우수업소를 '안전제품 판매 모범업소'로 지정하고, 홍보용 현판 제작 지원
- 제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안전교육 활성화
 - * 지자체와 협력하여 '어린이 제품안전 교육 프로그램'을 개발, 운영
 - * 언론, 방송매체 외에 인터넷 기반의 UCC 등 새로운 홍보매체 적극 활용
- 어린이용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의 개발·보급
 - * 어린이용 제품의 사용 연령별 안전가이드 및 교육교재 개발
 - * 육아·보육시설, 학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안전 교육 실시
- 어린이 안전체험관 상설운영
 - * 어린이용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제품구매 및 사용요령 교육
 - *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, 안정정책 수립에 반영

마. 제품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법적체계 완비

□ 생활제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정 ('09.6)

-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수립(매 5년)하여 제품안전정책을 총괄
 - *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, 규제의 합리화,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

○ 제품안전 주요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제품안전위원회를 설립, 운영

- * 제품안전 종합계획,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지정 및 안전기준 제·개정 등을 심의
- 유통·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의 선진화
 - * 안전성조사 확대, 제품 위해정보의 언론공표 및 제품리콜 등 행정조치 강화
- 제품안전 정보망 구축으로 위해정보의 수집·분석능력 제고
 - *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설립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국민 경보발령시스템 운영
- 제품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행정·재정적 지원 확대
 - * 제품안전 관련 기술개발 및 전담기관 설립 등 정부지원 확대

| 기술표준 2009.3

